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시 보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장

제 64 호 2015. 6.30(화)

조 례

- 남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1
-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19
-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33
-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42
-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56
-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99
-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114
-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118
-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122
-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153

회 람										
----------------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9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6월 30일

남원시 조례 제 1166 호

남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환경보전에 관 한”을 “남원시의 환경보전에 관한”으로, “이념과 시”를 “이념과 남원시”로, “시민”을 “남원시민”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시의 환경보전”을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으로, “시민”을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영위함”을 “하기”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환경”이라 함은”을 ““환경”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연환경”이라 함은”을 ““자연환경”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생활환경”이라 함은”을 ““생활환경”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타”를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을 ““환경훼손”이란 야생 동·식물”로, “생태계질서”를

“생태계 질서”로, “등으로 인하여”를 “등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환경보전”이라 함은”을 ““환경보전”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오존층파괴·해양오염·생물다양성”을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오존층파괴·해양오염·생물 다양성”으로, “일체의”를 “모든”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시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는”을 “시장은”으로, “특히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수립하고 이를”을 “수립하고”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이를 방지함”을 “방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조·가공·판매과정”을 “제조·가공·판매 등 전과정”으로, “저감하여야”를 “줄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품 또는 기타”를 “제품, 그 밖에”로,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협조하고 재정지원”을 “협조하고, 재정 지원”으로 한다.

제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히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지도하거나 관할 기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사업활동으로 인하여”를 “사업활동으로”로, “야기한”을 “일으키는”으로, “환경훼손으로 인한”을 “환경훼손에 따른”으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실천”을 “생활화”로, “교육”을 “환경교육”으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를 “조치를 마련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식의 전환과”를 “인식을 높이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등 시민단체는”을 “등은”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남원시환경보전계획(이하”를 “남원시 환경보전계획(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제10조 중 “사업에 대하여”를 “사업은”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의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으로, “검토하고”를 “검토하고,”로, “강구·시행하여야”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로 한다.

제11조 중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를 “필요한 규제 조치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12조 중 “시는”을 “시장은”으로,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시와”를 “시장과”로, “기본임에 비추어”를 “기본임을 알고”로, “유지 보전되도록”을 “유지·보전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는”을 “시장은”으로,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14조 중 “시민 및 사업자에 의한”을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로,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15조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포

함)에 대하여 남원시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을 “포함)에
 계 예산의 범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포상 방법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제1항 중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 기타 환경관련”을 “환경훼손에 따른 분
 쟁, 그 밖에 환경 관련”으로, “환경훼손으로 인한”을 “환경훼손에 따른”으로,
 “환경분쟁조정”을 “환경분쟁조정”으로,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야기한”을 “일으키는”으로, “부담원칙에 따라 그에 따
 른”을 “부담 원칙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
 단체와의 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중
 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책에 대하여”를 “시책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정보·기술 등의 교류에 협력하여
 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경보전”을
 “환경보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20조제2항 중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른」이 정하는 바”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 중 “교육기관 기타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을 “교육기관, 그 밖에 관
 련 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으로, “깊게하고”를 “깊게하고,”로, “강구하여야”
 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지역내”를 “지역 내”로, “상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로, “관계전문가”를 “관계 전문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등”으로, “수집에 노력함은 물론 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를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로, “그 과의”를 “그 성과의”로 한다.

제23조 제1항 중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을 “위하여 시책추진에 필요한”으로,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은 시민의”를 “시장은”으로, “시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및 환경보전활동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재정지원”을 “재정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민, 사업장,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사업 및 녹색생활 운동 촉진사업
3. 시민, 사업자, 단체 등이 수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실천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환경 및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 중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를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환경보전실천의 활성화를 위하여”로, “행정이다함께 참여, 환경보전실천의 활성화를 위하여”를 “행정으로 구성된”으로 한다.

제25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시, 사업자 및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남원시의 환경보전에 관한</u>----- ----- <u>이념과 남원시</u>----- <u>남원시민</u>----- ----- ----- ----- ----- ----- ----- ----- ----- -----</p>
<p>제2조(기본이념) ① <u>시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미래세대에게 계승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u> ②·③ (생략)</p>	<p>제2조(기본이념) ① <u>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u>-- <u>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u>-- <u>하기</u>-----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는 다음과 같다.</u></p> <p>1. “<u>환경</u>”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u>자연환경</u>”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p>	<p>제3조(정의) ----- ----- <u>뜻은</u>----- ----- ----- 1. “<u>환경</u>”이란----- ----- 2. “<u>자연환경</u>”이란----- -----</p>

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환경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

-----.

3. “생활환경”이란-----

-----.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이
나-----

-----.

5. “환경훼손”이란 야생 동·식
물----- 생태계
질서-----
----- 등으로-----
-----.

6. “환경보전”이란-----

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 7.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오존층파괴·해양오염·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인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 1. ~ 8. (생략)
- 9. 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

-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오존층파괴·해양오염·생물 다양성-----

----- 모든 -----

-----.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

----- 다음 각 호 -----

----- 수립하고 -----
-----.

- 1. ~ 8. (현행과 같음)
- 9. 그 밖의 -----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

----- 방지 -----

-----.

② ----- 제조·가공·판매 등 전과정 -----

----- 줄여야.

③ ----- 제품, 그 밖에 -----

-----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

-----.

④ -----

----- 협조하고, 재정 지원 -----

-----.

제6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② (생략)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

2. ~ 5. (생략)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학교·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② (현행과 같음)

③ -----

----- 다음 각 호 -----
-----.

1. ----- 발견 시
에는 현장에서 지도하거나 관
할 기관-----

2. ~ 5. (현행과 같음)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
----- 사업활동
으로-----

- 일으키는 -----

----- 환경훼손에 따른-----
----- 필요한-----

-.

제8조(학교·언론 등의 역할) ①

----- 생활화-----
----- 환경교육-----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원시환경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조치를 마련하여야-----.

② -----
----- 인식을
높이고 -----
-----.

③ ----- 등은-----

-----.

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

----- 남원시 환경보
전계획(이하 -----

-----.

② 제1항에 따른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④ (생략)

제10조(환경영향 검토) 시장은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 조치) 시장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절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환경영향 검토) -----

----- 사업은 -----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
----- 검토하고, -----

-----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

제11조(규제 조치) -----

----- 필요한 규제 조치를 마련하여

제12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 동·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시와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 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3. (생략)

③ 시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약-----
제12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

마련하여야 -----.

제13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시장 과 -----

기본임을 알고-----
----- 유
지·보전되도록 -----.

② ----- 각
호-----
-----.
1. -----

범위-----
--.

2.·3.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시장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방지를 위하여 시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시민참여) 시장은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포상 등) 시장은 환경보전활동에 공헌한 유공자(단체 포함)에 대하여 남원시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 마련하여야
-----.

제14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

-----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

----- 마련하여야 -----.

제15조(시민참여) -----

----- 마련하여야 -----.

제16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포상 등) ① -----

----- 포함)에게 예산의 범위 -----
-----.

② 포상 방법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 시장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 훼손으로 인한 분쟁 기타 환경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야기한 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그에 따른 오염방지 비용 뿐만 아니라 피해구제에 대한 책무를 진다.

제18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

① -----
 -- 환경훼손에 따른 분쟁, 그 밖에 환경 관련 -----

 ----- 환경훼손에 따른 -----
 ----- 환경분쟁조정에 -----
 -- ----- 마련 하여야 -----.

② -----
 ----- 일으키는 -----
 ----- 부담 원칙에 따라 -----

 -----.

제18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 -----

 ----- 시책은 -----

 -----.

② 시장은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정보·기술 등의 교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의 공개) ① -----

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시장은 교육기관 기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시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시장은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 환경보전

----- . 다만,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
----- 등
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 교육기관, 그 밖에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

깊게하고, -----

----- 마
련하여야 -----.

제22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

지역내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현황, 환경질의 변화 등 환경상태를 상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절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은 물론 학제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환경보전활동에 관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및

----- 지역 내 -----

 ----- 정기
적으로 조사하여야-----

 ----- 관계 전문가-----

 -----.

② -----

 ----- 등-----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 그 성과의 -----
 -----.

제23조(환경보전활동에 관한 재정지원 등) ① -----
 ----- 위하여 시
책추진에 필요한 -----
마련하여야 -----.

② 시장은-----

 ----- 예산의 범위에
서 다음 각 호의 사항-----

환경보전활동 등에 필요한 기술 지도·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4조(추진협의회 설치) 환경보 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시민, 기업, 행정이다함께 참여, 환경보전실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재정 지원-----
-----.

1. 시민, 사업장,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사업 및 녹색생활 운동 촉진사업

3. 시민, 사업자, 단체 등이 수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실천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환경 및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추진협의회 설치)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환경보전실천의 활성화를 위하여 -- 행정으로 구성된-----
-----.

제25조(시행규칙) -----
시행에-----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6월 30일

남원시 조례 제 1167 호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은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 열거하는”을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불상황”을 “수불(受拂) 상황”으로 한다.

제6조 제1호가목 중 “읍·면”을 “시”로, “2,000원”을 “10,000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시 지역”을 “시”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를 “사업소는 제1항”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기재하여”를 “적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실 발생일”을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개축하였을 때”를 “개축하였을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된 때”를 “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변경한 때”를 “변경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이전하였을 때”를 “이전하였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폐업하였을 때”를 “폐업하였을 경우”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기재하여”를 “적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실 발생일로부터”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신설하였을 때”를 “신설하였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전하였을 때”를 “이전하였을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폐업하였을 때”를 “폐업하였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상시”를 “평상시”로, “변경된 때”를 “변경된 경우”로 한다.

제12조 제2호나목 중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를 “영 제110조”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언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하는 때”를 “해당하는 경우”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면적이 증감된 때”를 “면적을 증감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축한 때”를 “개축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된 때”를 “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된 때”를 “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된 때”를 “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증감한 때”를 “증감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변경된 때”를 “변경된 경우”로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설치하였을 때”를 “설치하였을 경우”로, “기제한”을 “적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하는 때”를 “해당하는 경우”로, “기제한”을 “적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취득한 때”를 “취득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멸실되었을 때”를 “멸실되었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된 때”를 “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된 때”를 “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된 때”를 “된 경우”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하는 때”를 “해당하는 경우”로, “기제한”을 “적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취득한 때”를 “취득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멸실되었을 때”를 “멸실되었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된 때”를 “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된 때”를 “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된 때”를 “된 경우”로 한다.

제20조 중 “사람을”을 “자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호에 열거하는”을 “호의”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재산에 대하여”를 “재산을”로,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23조 중 “지정일”을 “지정한 날”로 한다.

제24조제1호 전단 중 “산정”을 “산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전단 중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를 “초과한 자동차”로, “가산”을 “더”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시장으로부터”를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울산광역시”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정정을”을 “고쳐달라고”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균등분의 인상에 관한 특례) 제6조제1호가목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개인의 세액은 7,000원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u>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다.</u>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u>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은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다.</u>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u>증빙서류</u> 3. <u>수불상황</u>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 ----- ----- ----- <u>호의</u>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u>증명서류</u> 3. <u>수불(受拂)상황</u> ----- -----
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u>읍·면에</u> 주소를 둔 개	제6조(세율) ----- ----- ----- ----- 1. ----- 가. <u>시</u> -----

인: 2,000원

나. 동에 주소를 둔 개인: 3,600원

다. 시 지역에 사업소를 둔 개인: 50,000원

2. (생략)

제7조(세율) ① (생략)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8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북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

10,000원

<삭제>

다..시-----

2. (현행과 같음)

제7조(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업소는 제1항-----

-.

제8조(신고의무) ① -----

---적어-----
-----.

② -----
-----그 사실이 발생한
날-----

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
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
할 수 없게 된 때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
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
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
였을 때

-----예외로 한
다.

1.-----개축하였
을 경우

2.-----
-----된 경우

3.-----
-----변경한
경우

4.-----이전하였을
경우

5.-----폐업하였을 경우

제10조(신고의무) ① -----

적어-----

② -----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

1.-----신설하였을 경
우

2.-----이전하였을
경우

3.-----폐업하였
을 경우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2조(세율)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 략)

2. 건축물

가. (생 략)

나. 시(읍·면지역은 제외한

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

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

13조에서 정하는 지역 중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

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생 략)

3. ~ 5. (생 략)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
역을 남원시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을 변경 또
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

4. 평상시-----변
경된 경우

제12조(세율) -----

-----.

1.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

-----영 제110조-----

다.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

-----받아
-----.

② -----

-----제1항

정에 따른다.

제17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북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

-----.

제17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

해당하는 경우-----

적은-----

예외로 한
다.

1. -----
면적을 증감한 경우
2. -----
개축한 경우
3. -----
된 경우
4. -----
된 경우
5. -----
된 경우
6. -----
증

적을 증감한 때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북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북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한 경우

7. -----

-----변경된 경우

② -----

설치하였을 경우-----

-----적은-----

-----예외로 한다.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

-----해당하는 경우-----

-----적은-----

-----예외로 한다.

4.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4. -----
-----된 경우

5.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5. -----
-----된 경우

제20조(재산세과세대상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재산세과세대상 직권등재) -----

-----자를-----

제21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21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

-----호의-----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제22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

제22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

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3조(납세관리인 지정) 시장은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재산을-----

 -----밖에-----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납세관리인 지정) -----

 -----지정한 날-----

 -----.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

 -----.

1. -----

 -----산출-----

 -----.

(현행과 같음)

2.·3. (생략)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5.·6. (생략)

제25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시장은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3. (현행과 같음)

4. -----

-----초과한
자동차-----

-----더-----
-----.

(현행과 같음)

5.·6. (현행과 같음)

제25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

② -----

-----특
별징수의무자-----
-고쳐달라고-----.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6월 30일

남원시 조례 제 1168 호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농업·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을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농산물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산물을 품질 좋은 식품으로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식품산업의 육성 및 농업인력 육성, 농업·농촌 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농업인 등의 책무) 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수한 품질의 원료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여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와 방법) 시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및 융자, 그 밖의 보상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농업인의 소득보전 등)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쌀, 밭작물, 원예농업 등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과 생산성 향상, 품질관리 및 직불금 지원 사업
2.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리시설물 확충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3.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등의 지원 사업
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사업
5.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드는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6.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7.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
8. 내수면 자원보전과 환경개선 등 지원 사업
9. 그 밖에 WTO·FTA 등 대외 농업환경변화에 대응력 제고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농업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 시장은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식품산업 개발 및 소비 촉진 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수·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 공급 사업
3. 농산물의 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전시·판매 등 판촉 지원 사업
4. 산지 브랜드경영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출하, 경영체육성 등 활성화 지원 사업

5. 농산물의 가공·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 브랜드 개발사업
6. 미래의 농업 및 식품산업 인력육성과 신지식·벤처 농업인 육성과 농업 융복합 사업
7.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8. 농업·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6차산업과 신활력 제고사업
9. 축종별 경쟁력제고에 필요한 생산성 향상, 품질·위생수준제고, 유가공 등 가공산업활성화 지원과 곤충산업 등 신 소득 개발분야 지원 사업
10. 가축 개량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 사업
11. 축산물의 생산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2.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13.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시장은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2.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복지사업
3.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선진농업연수, 교육, 행사 등의 지원 사업
4.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목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6. 농촌체험관광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를 위한 사업

- 8.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복지증진사업
- 9. 농업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 10. 이주여성 농업인 등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
- 11. 그 밖에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농업 재해의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 2. 농업인 안전보험료
- 3.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가축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4.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 이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지원신청) ①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관내 농업인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해로 발생한 피해상황은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사업 결정) 읍·면·동장 또는 농업인 등이 제11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은 세부사업별로 사업시기와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별 자체선정심의회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제15조에 따른 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해에 따른 복구 등 긴급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 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지원금 교부) ① 시장은 지원 사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으려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사후관리) 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농업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회 설치) 시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6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 증진, 도농 균형 발전과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농업 관련 기관, 단체의 장이 교체된 경우에는 후임 기관, 단체의 장이 위원의 자격을 승계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 지원 관련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농업지원 관련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증언,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질병, 장기간 출타,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21조(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위원의 성명, 회의안건, 회의 결과 등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로 정한다.

제22조(수당)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따른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받은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6월 30일

남원시 조례 제 1169 호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두대간의 문화·역사·생태 자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백두대간”이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2. “시설물”이란 다목적강당, 기획 전시실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3. “수탁자”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전시관 등을 운영 관리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입장료”란 생태교육장 전시관 (이하 “전시관” 이라 한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시설사용료”란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시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전시관은 남원시 운봉읍 운봉로 159-9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시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두대간의 다양한 자원과 가치를 알리는 국민 홍보·교육장의 역할
2. 백두대간 고유의 역사·문화·자원들을 발굴·보존·전시하는 역사·문화 공간의 역할
3. 백두대간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변 휴양 관광시설과 연계한 기반시설의 역할
4. 살아있는 곤충을 활용한 자연 학습
5. 그 밖에 전시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공 등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전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 한다.

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및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의 다음날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전시관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에 전시관 게시판 및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관람 및 운영시간) ① 관람 및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관·호랑이 라이더관·서클영상실·곤충온실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등) ① 전시관 입장료는 별표 1로 하고, 입장권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전시관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판매 시 이를 징수한다.

제8조(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3급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7.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9. 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 시민으로 인정하는 사람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입장 및 행위제한) ① 시장은 전시관의 보호 및 이용객의 안전 등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3.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입장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전시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2. 만취되어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3. 시설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보호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시설 사용료 등) ① 전시관을 방문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전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 사용료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시설 사용권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1조(시설 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 1. 국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요금표 등의 게시) 시장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매표소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사용의 예약 및 반환) ① 시설사용 예약자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시설 사용료를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당일 신청자는 신청 즉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 2.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 전액
- 3. 사용일 2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 80퍼센트
- 4.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 50퍼센트
- 5. 사용 당일 취소하거나 사용일이 지날 때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 미반환.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전액 반환할 수 있다.

③ 반환은 예약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
- 2. 시설물의 긴급 개선·보수 시

3. 그 밖에 시설물 사용 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제한할 경우 3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난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전시관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식당
- 2. 편의점
- 3. 기념품점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6조(손해배상) ① 시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손해배상에 따른 세부사항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운영 및 위탁) ① 전시관은 시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기관이나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단체 및 개인 현황, 사업계획서, 각서를 붙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위·수탁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 운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위탁 운

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 사용료 결정) 위탁 사용료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비품 등을 잃어버릴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이행사항을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직원에게 위탁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받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검사 또는 조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9조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수탁자는 전시관 운영·관리에 따른 서류 및 장부 등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세입조치) 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전시관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다만 위탁 관리 시에는 별도 계약에 따른다.

제2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장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입장료 (관람료)						비 고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전 시 관	2,000	1,500	1,500	1,000	1,000	500	- 어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 - 청소년 군인 :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및 하사 이 하 군인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호랑이 라이더관	1,000	500	1,000	500	1,000	500	
서클 영상관	2,000	1,500	2,000	1,500	1,500	1,000	
곤충온실	1,000	500	1,000	500	1,000	500	
통합입장료	5,000	3,000	4,000	2,000	3,000	2,000	

* 단체 : 20명 이상

[별지 제1호서식]

입 장 권(제7조 관련)

1. 전시관

	20cm	
편 철 부 분	NO. _____	전시관 입장권 NO. _____
	전시관 입장권(보관용)	(대표사진)
	·어 른(개인2,000/단체1,500)	·어 른(개인2,000/단체1,500)
	·청소년(" 1,500/ " 1,000)	·청소년(" 1,500/ " 1,000)
	·어린이(" 1,000/ " 500)	·어린이(" 1,000/ " 500)
6cm	년 월 일	년 월 일
2cm	남원시장	남원시장
		※ 본 입장권은 당일에만 유효합니다.
	6cm	12cm

입 장 권(제7조 관련)

2. 호랑이 라이더관

	20cm	
편 철 부 분	NO. _____	입장권 NO. _____
	호랑이 라이더관 입장권(보관용)	(대표사진)
	·어 른(개인1,000/단체500)	·어 른(개인1,000/단체500)
	·청소년(" 1,000/ " 500)	·청소년(" 1,000/ " 500)
	·어린이(" 1,000/ " 500)	·어린이(" 1,000/ " 500)
6cm	년 월 일	년 월 일
2cm	남원시장	남원시장
		※ 본 입장권은 당일에만 유효합니다.
	6cm	12cm

입 장 권 (제7조 관련)

3.서클 영상관

20cm	
6cm 편 철 부 분	NO. _____
	서클 영상관 입장권(보관용)
	·어 른(개인2,000/단체1,500)
	·청소년(" 2,000/ " 1,500)
	·어린이(" 1,500/ " 1,000)
	년 월 일
	남원시장
2cm	6cm

20cm	
NO. _____	입장권 NO. _____
서클 영상관 입장권(보관용)	(대표사진)
·어 른(개인2,000/단체1,500)	·어 른(개인2,000/단체1,500)
·청소년(" 2,000/ " 1,500)	·청소년(" 2,000/ " 1,500)
·어린이(" 1,500/ " 1,000)	·어린이(" 1,500/ " 1,000)
	년 월 일
	남원시장
	※ 본 입장권은 당일에만 유효합니다.
12cm	6cm

입 장 권(제7조 관련)

4. 곤충온실

20cm	
6cm 편 철 부 분	NO. _____
	곤충온실 입장권(보관용)
	·어 른(개인1,000/단체500)
	·청소년(" 1,000/ " 500)
	·어린이(" 1,000/ " 500)
	년 월 일
	남원시장
2cm	6cm

20cm	
NO. _____	입장권 NO. _____
곤충온실 입장권(보관용)	(대표사진)
·어 른(개인1,000/단체500)	·어 른(개인1,000/단체500)
·청소년(" 1,000/ " 500)	·청소년(" 1,000/ " 500)
·어린이(" 1,000/ " 500)	·어린이(" 1,000/ " 500)
	년 월 일
	남원시장
	※ 본 입장권은 당일에만 유효합니다.
12cm	6cm

입 장 권(제7조 관련)

5. 통합입장권

	20cm		
편 철 부 분	NO. _____	전시관 입장권	NO. _____
	전시관 입장권(보관용)	(대표사진)	
	·어 른(개인5,000/단체 3,000)	·어 른(개인5,000/단체 3,000)	
	·청소년(" 4,000/ " 2,000)	·청소년(" 4,000/ " 2,000)	
	·어린이(" 3,000/ " 2,000)	·어린이(" 3,000/ " 2,000)	
6cm	년 월 일	년 월 일	
	남원시장	남원시장	
		※ 본 입장권은 당일에만 유효합니다.	
2cm	6cm	12cm	

[별표 2]

시 설 사 용 료 (제10조 관련)

구 분	사 용 료(원)			비 고
	4시간	8시간	1일	
다목적강당	100,000	150,000	200,000	· 냉·난방 시설 : 1회 30,000원 · 1회 기준 4시간 이내

구 분	사 용 료(원)			비 고
	4시간	8시간	1일	
기획 전시실	50,000	100,000	150,000	· 냉·난방 시설 : 1회 30,000원 · 1회 기준 4시간 이내

[별지 제2호서식]

1. 시설사용권(다목적강당)(제10조 관련)

<전 면>

	20cm		
편 철 부 분 6cm	NO. _____	사용권	NO. _____
	사용권(보관용)	절	다목적 강당
	【다목적강당】	취	
	사용료 : 원	선	
	년 월 일		
2cm	6cm	12cm	
	남원시장		남원시장
			※ 본사용권은 1회만 유효합니다.

<후 면>

	20cm		
6cm	※ 유의사항		편 철 부 분 2cm
	◦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절	
	◦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취	
	◦ 문의처	선	
	- 홈페이지 : http://www . (Tel.)		
	- 전북 남원시 운봉읍 운봉로 159-9		
	남원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 전시관		
12cm	6cm	2cm	

2. 시설사용권(기획 전시실)

<전 면>

		20cm	
6cm 편 철 부 분	NO. _____	사용권	NO. _____
	사용권(보관용)	절	기획 전시실
	【기획 전시실】	취	
	사용료 : 원	선	
	년 월 일		
	남원시장	남원시장	
		※ 본사용권은 1회만 유효합니다.	
2cm	6cm	12cm	

<후 면>

		20cm		
6cm	※ 유의사항 ◦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홈페이지 : http://www . (Tel.) - 전북 남원시 운봉읍 운봉로 159-9 남원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 전시관			
		절	편 철 부 분	
		취		
		선		
12cm	6cm	2cm		

[별지 제3호서식]

위·수탁 승인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소 재 지)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단 체 명)		전 화 번 호	
시 설 명				
사용일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일까지	
수 탁 조 건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7조제 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붙임 : 1. 단체 및 개인 현황 1부
 2. 사업계획서1부
 3. 각 서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원시장 귀하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6월 30일

남원시 조례 제 1170 호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64조제3항”을 “「도로법」 제52조”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절차, 설치기준, 그 밖의”를 “연결하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가속 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차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가드레일, 낙석 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를 “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사설(私設)안내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측도(側道)”란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9.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10.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연석(緣石)”이란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선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중 “제13조”를 “제23조제2항”으로, “도로·통로 및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 등”)을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로, “경우에 이를”을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를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로 한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 등”을 “도로와 다른 시설”로,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 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

제4조 제2항 제3호 중 “경우만 해당된다)”를 “경우에만 해당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 “등이 포함될 것)”를 “등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연결공사중”을 “연결공사 중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요령”을 “작성요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을 “시설을 연결하려면”으로, “신청하고자 하는”을 “신청하려는”으로,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하는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이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변경신청서”를 “변경신청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를 붙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 허가기준)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면 도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 허가 및 변경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 ② 시장은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

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연결허가구간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붙인다)를 작성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를 “구간은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제2호·제4호·제5호”를 “제1호·제2호·제5호”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을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곡선반경”을 “곡선반지름”으로, “시거”를 “시거(視距)”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를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허가”를 “구간은 연결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차로에 대하여”를 “교차로는”으로, “교차로 영향권”을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제3호가목 중 “제2조제1항제1호 상의”를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초래하는”을 “주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교량”을 “다리”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설치되어 이를”을 “설

치되어”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동일한 강도”를 “같은 세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일하거나”를 “같거나”로 한다.

제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하여야 한다.”를 각각 “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테이퍼와 사업부지”를 “사업부지”로, “곡선반경 15미터”를 “곡선반지름이 12미터”로, “처리하여야 한다”를 “처리할 것”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조 제5호 중 “동일하거나”를 “같거나”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것”으로 한다.

제8조의2 제3호 중 “곡선반경이 15미터”를 “곡선반지름이 12미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 제1호 중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9호에 따른 길어깨(이하 “길어깨”라 한다)”를 “길어깨”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연결하여야 한다.”를 “연결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설치로 인하여”를 “설치로”로,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를 “설치하여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으로, “측구”를 “측구(側溝)”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전단 중 “오수”를 “더러운 물”로,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것”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이 경우”를 “다만,”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전면”을 “앞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가드레일”을 “방호울타리, 교통섬(별표 2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치의 경우에 한정한다),”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을 “인공구조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30센티미터”를 “0.3미터(교통섬은 0.12미터)”로, “하여야 한다.”를 “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부착하거나”를 “붙이거나”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설치하는 때”를 “설치하는 경우”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것”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본문 중 “동등한”을 “같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25센티미터”를 “0.25미터”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가드레일”을 “방호울타리”로, “확보하여야 한다.”를 “확보할 것”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가드레일”을 “방호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동일한”을 “같은”으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을 “설치되지 않은”으로, “하여야 한다.”를 “할 것”으로 한다.

제13조 중 “시설공사에 있어서”를 “시설공사 중에서”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곡선구간의 곡선반경"을 "곡선구간의 곡선반지름"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를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제4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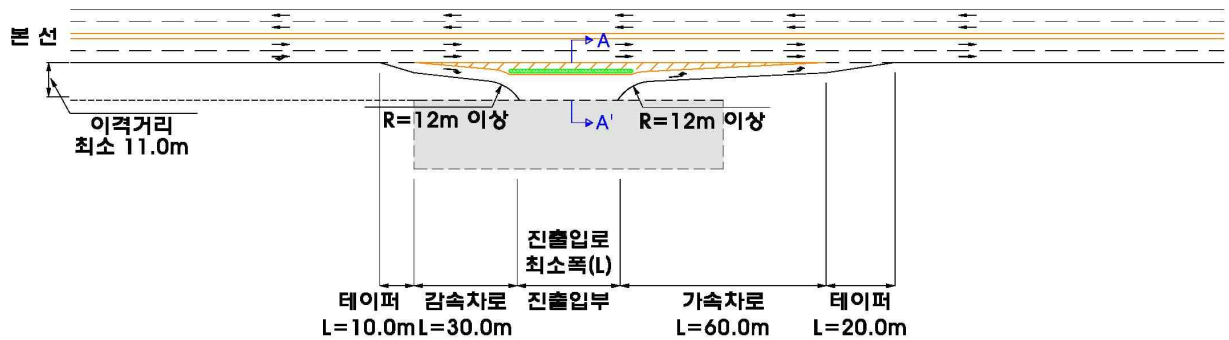
도 면 명	작 성 요 령
위 치 도	1/50,000(또는 1/25,000) 축척의 지형도에 연결 시설물의 위치 표시
평 면 도	연결부 주변의 지형·지물을 1/1,2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접속되는 도로의 중앙선, 포장 끝선, 길어깨선, 도로부지 경계선, 접도구역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도류화시설, 배수시설, 분리대, 그 밖의 시설물의 위치 등을 표시. 다만, 도로대장 또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제작된 기본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
중 단 면 도	세로 방향 1/1,200 이상, 가로 방향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 [측점(測點)은 20미터 간격으로 하되, 땅의 표면 높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추가 측점으로 설치]
횡 단 면 도	측점마다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배수시설, 분리대, 도로의 중심선,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의 경계선 등을 표시. 횡단면의 범위는 시공계획 폭 양쪽으로 연결 시설물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
구 조 물 도	각종 구조물의 규격과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로 표시하여 작성
부 대 공 사 도	변속차로 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방호시설, 노면표시 등)에 대한 상세도 작성

[별표 2] <개정 2014.1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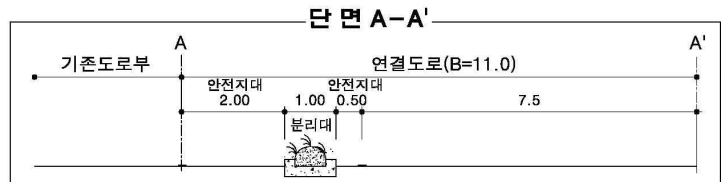
변속차로 등의 설치방법(제4조제4항 관련)

1. 직접식 변속차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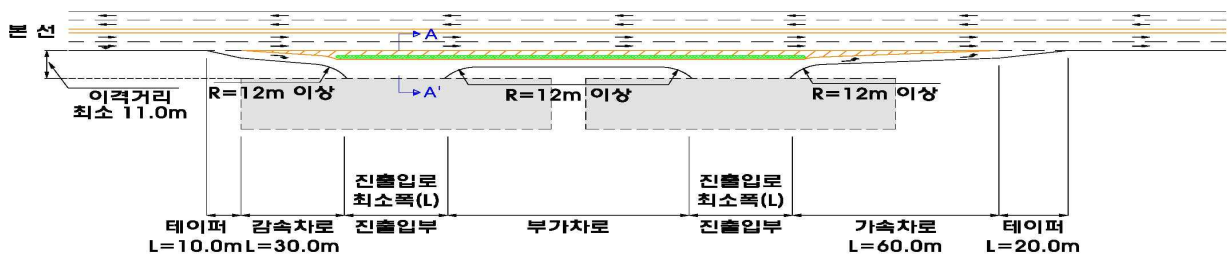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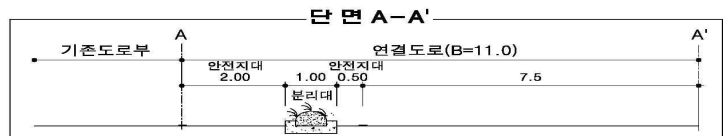
■ 사업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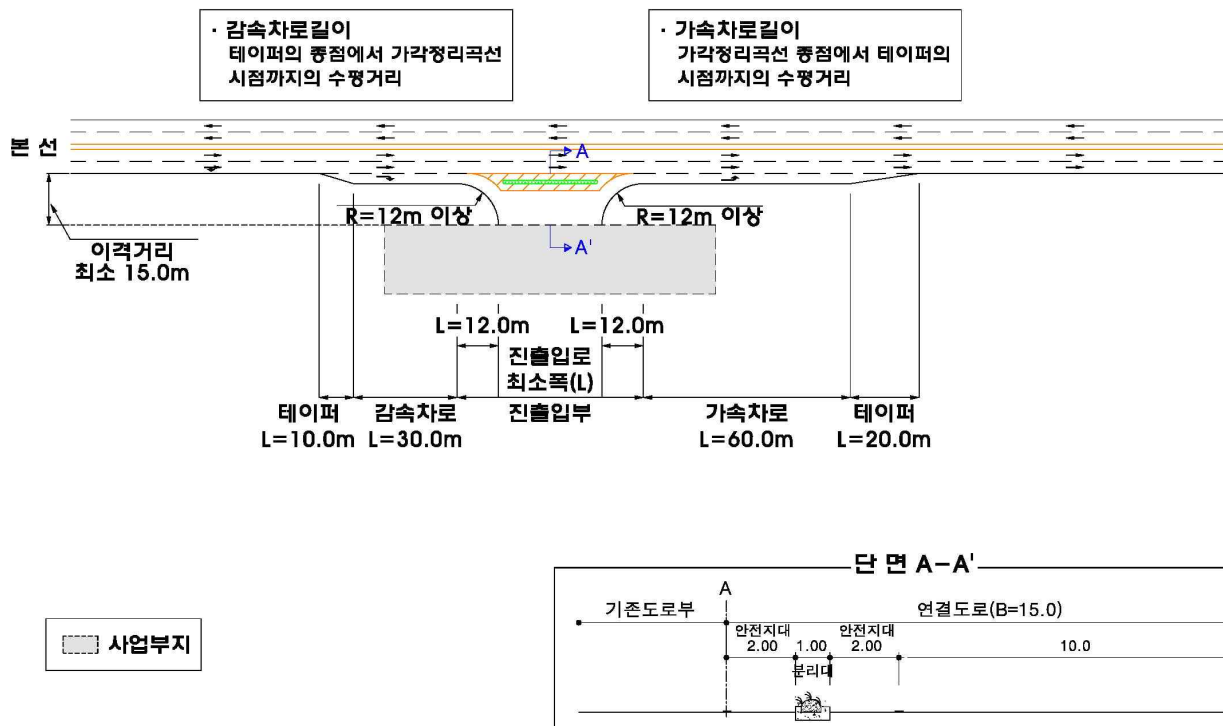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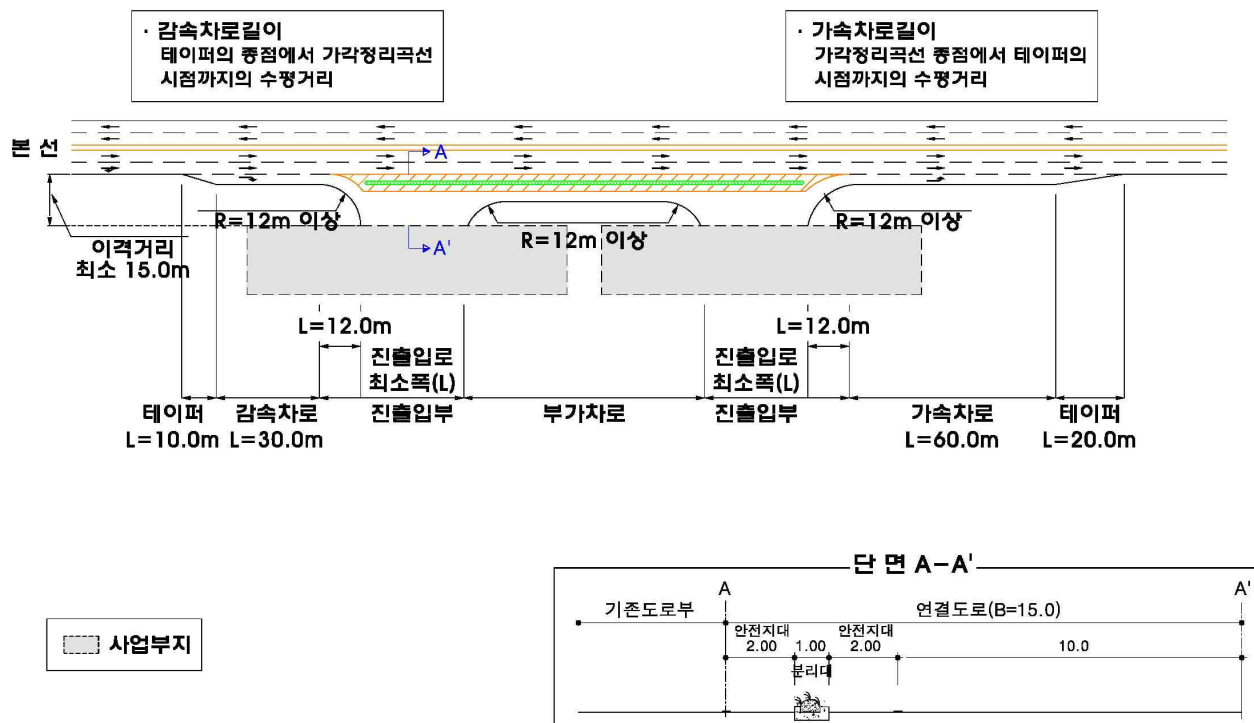
■ 사업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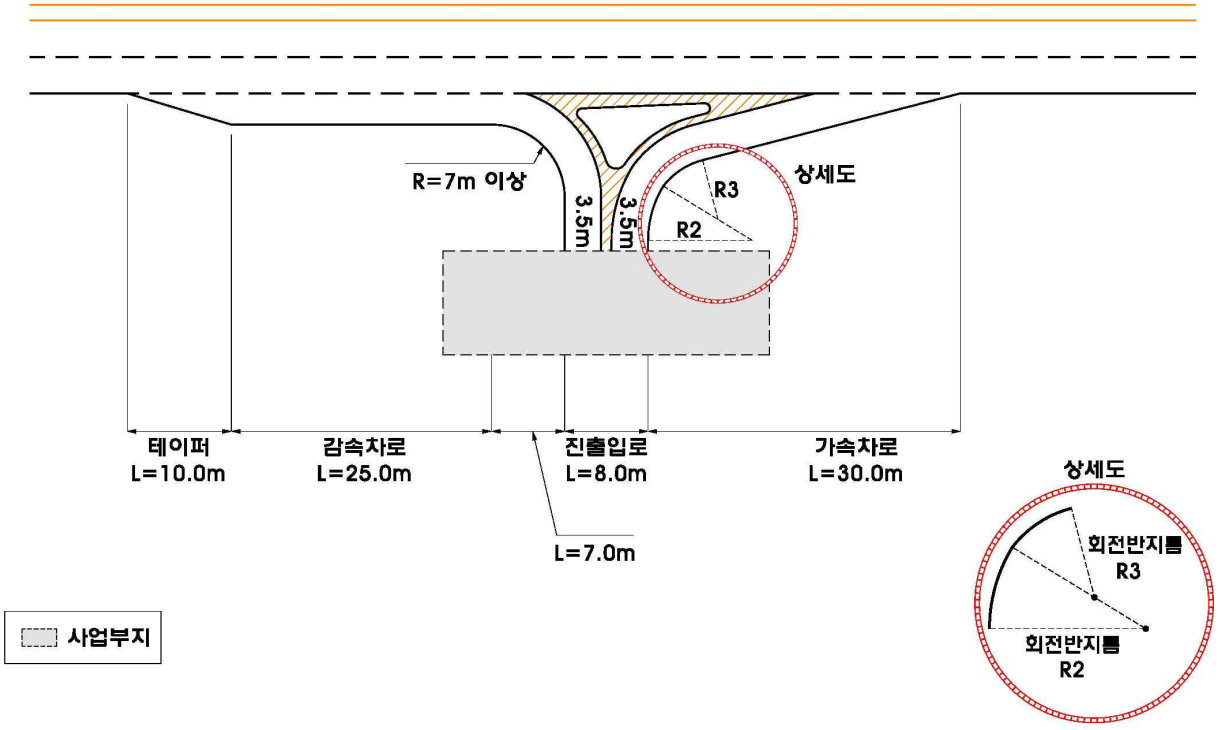
2.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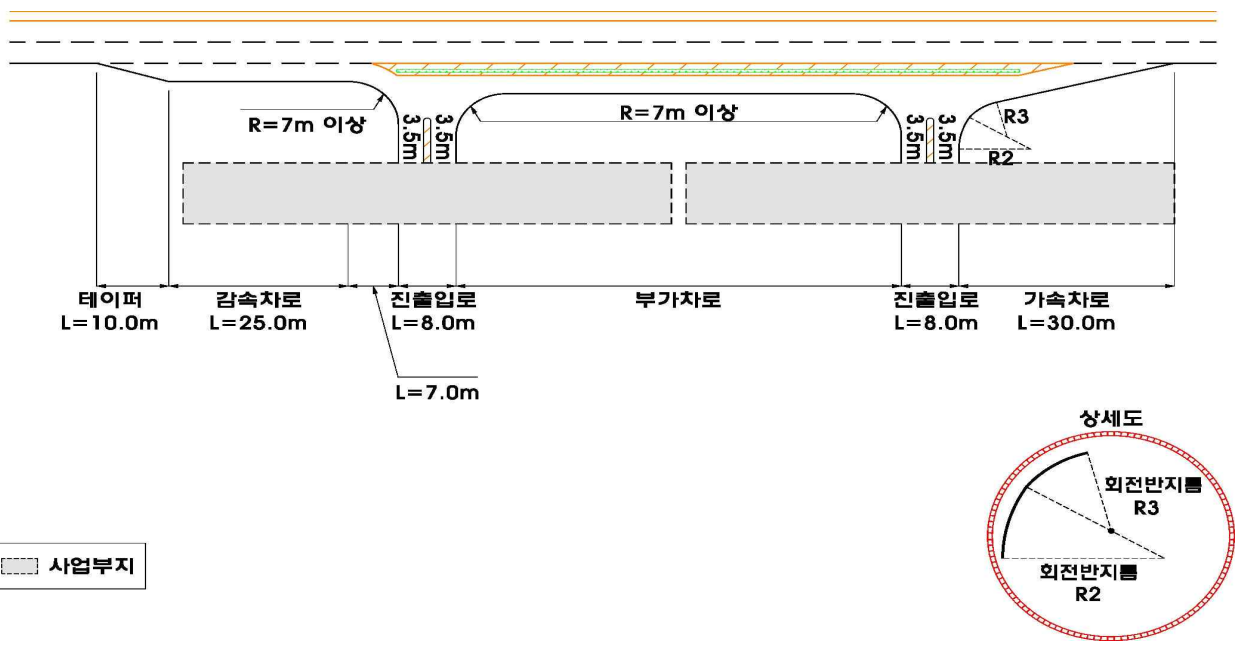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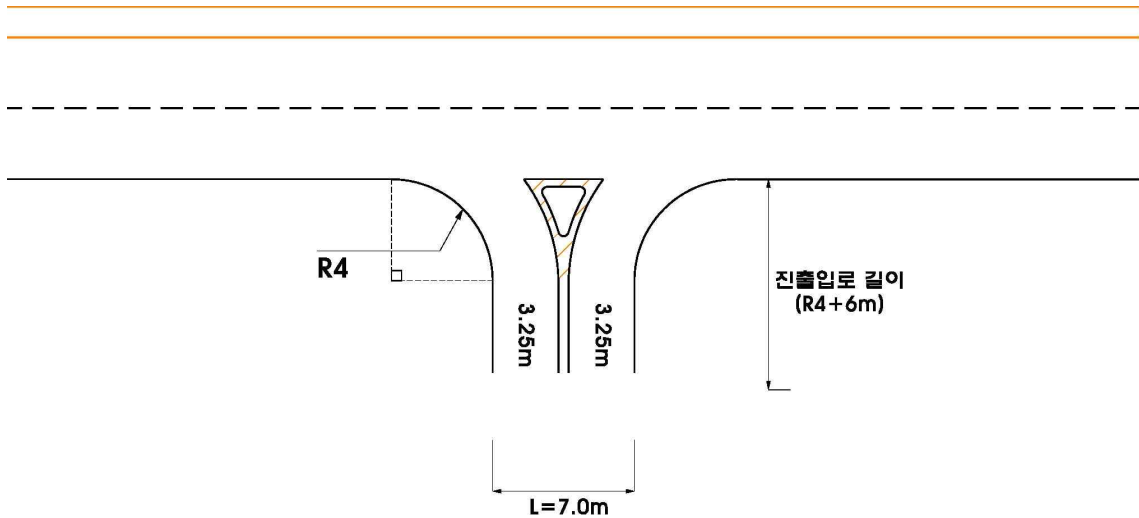
3. 평행식 감속차로와 직접식 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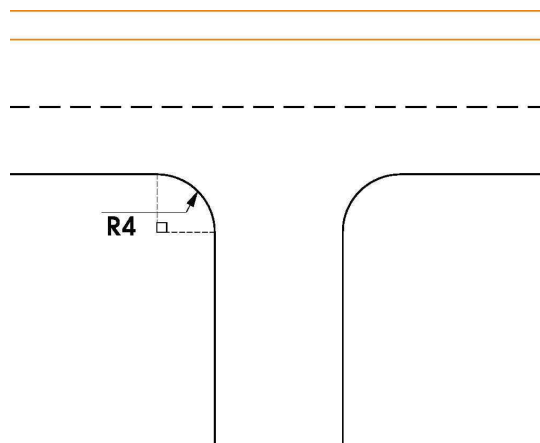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4. 도로의 모서리곡선화를 통한 변속차로 대체(代替) 설치
가. 곡선 반지름(R_4) 5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곡선 반지름(R_4) 3미터 이하인 경우



비고

1. 위 표 중 R 은 곡선반지름, L 은 길이를 말하며 그 단위는 미터(m)로 한다.
2. 사업부지와 변속차로 등의 연결지점은 부지경계선 중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부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위 표 중 이격거리는 본선 차도(길어깨를 제외한다)의 바깥쪽 차선과 사업부지 간의 최소 거리를 말한다.
4. 위 표 중 제1호와 제2호에서 진출입로 최소 폭(L)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 20m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최소 10m로 한다.
 - 가. 별표 5 제1호의 시설란 중 가목, 나목, 마목, 바목(주차대수 51대 이상), 사목(주차대수 51대 이상), 아목(101가구 이상)
 - 나. 별표 5 제2호의 시설란 중 가목, 나목, 마목, 바목(주차대수 31대 이상), 사목(주차대수 51대 이상), 아목(101가구 이상)

- 5. 위 표 중 제3호가목과 제4호가목은 분리대를 교통섬의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 6. 위 표 중 제3호에서 곡선 반지름 R_2 , R_3 의 크기는 가속차로의 길이에 따라 결정되며 그 최소 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가속차로의 길이(미터)	R_2 (미터)	R_3 (미터)
30	10	7
25	7	5
20	7	5

[별표 4]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기준(제6조제3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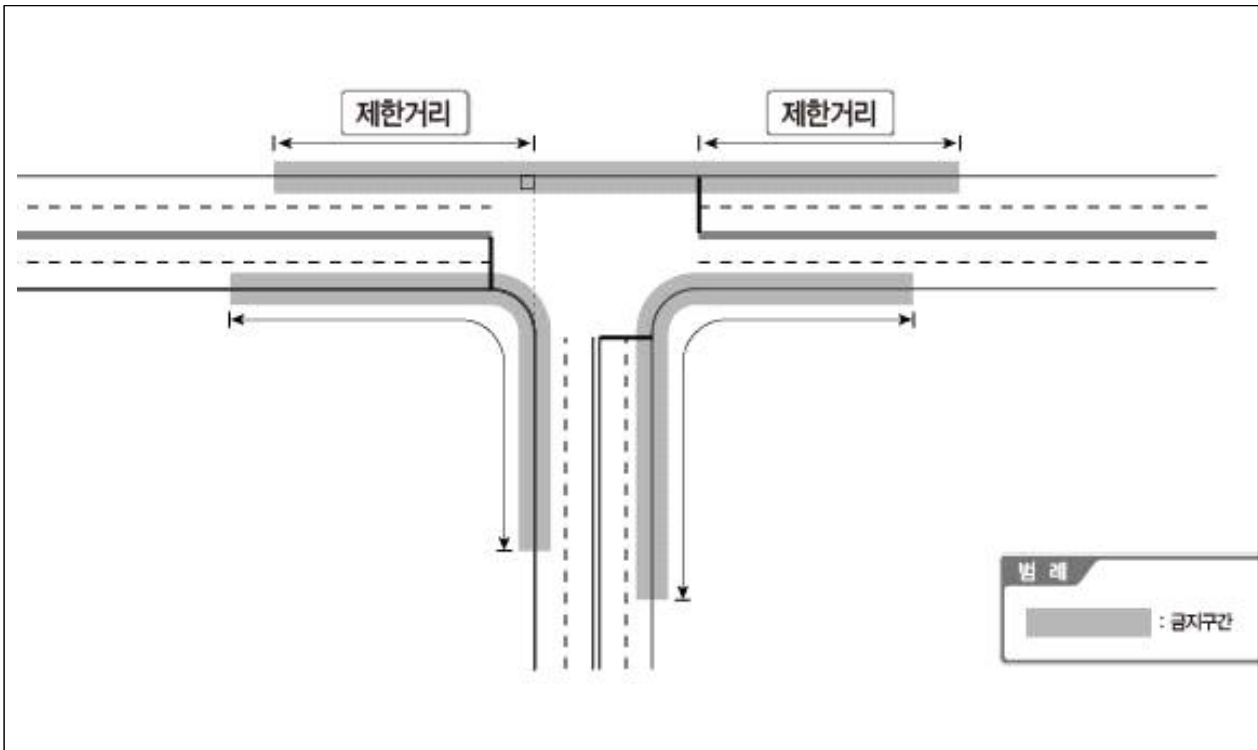
1.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도로가 교차하는 물리적인 영역과 제한거리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감속차선의 경우 차량의 정지선에서부터 산정하고, 가속차선의 경우 교차하는 도로의 연장선과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그 밖의 지역
50	25	40
60	40	60
70	60	85
80	70	100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2.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교차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에 진입하는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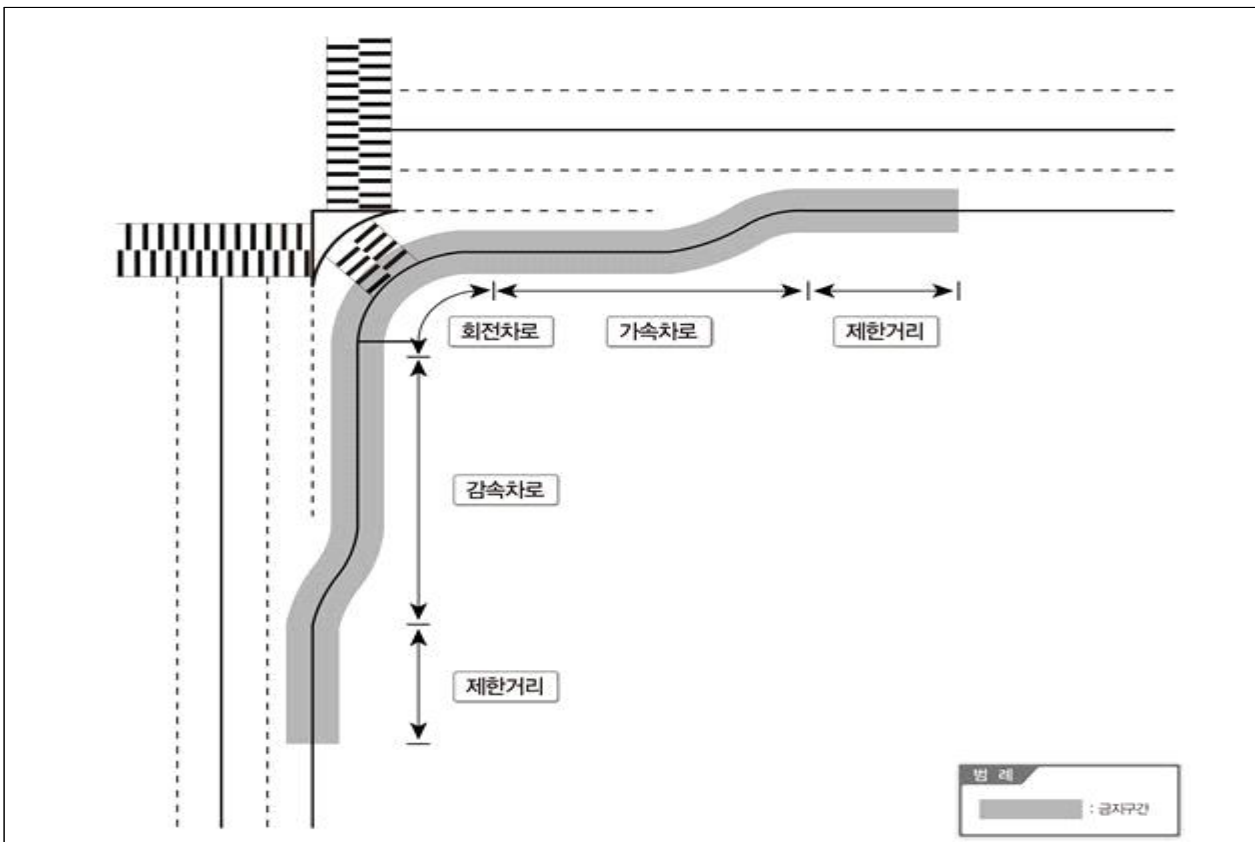
나. 제한거리는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가속·감속차로 전방·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그 밖의 지역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10	20

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3. 입체교차로에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입체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연결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의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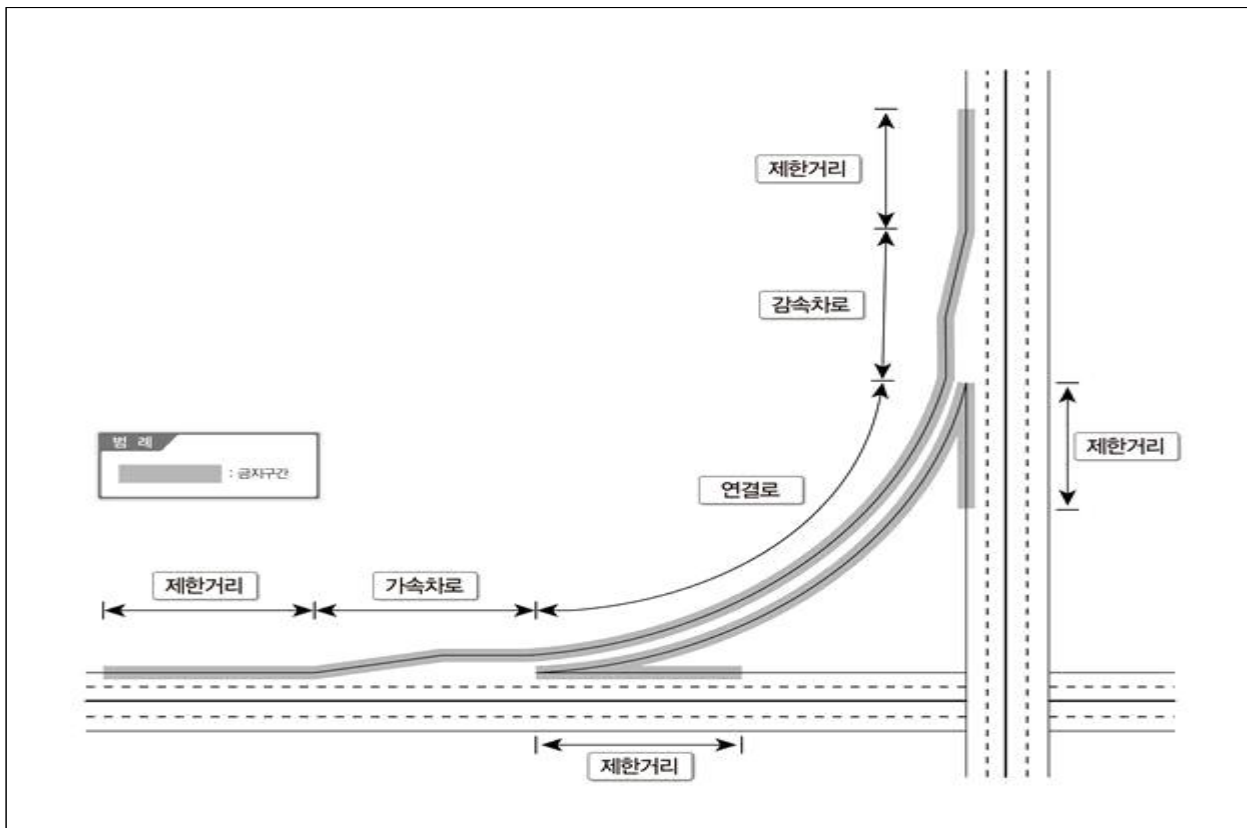
나. 제한거리는 연결로가 접속된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연결로 접속부 전방·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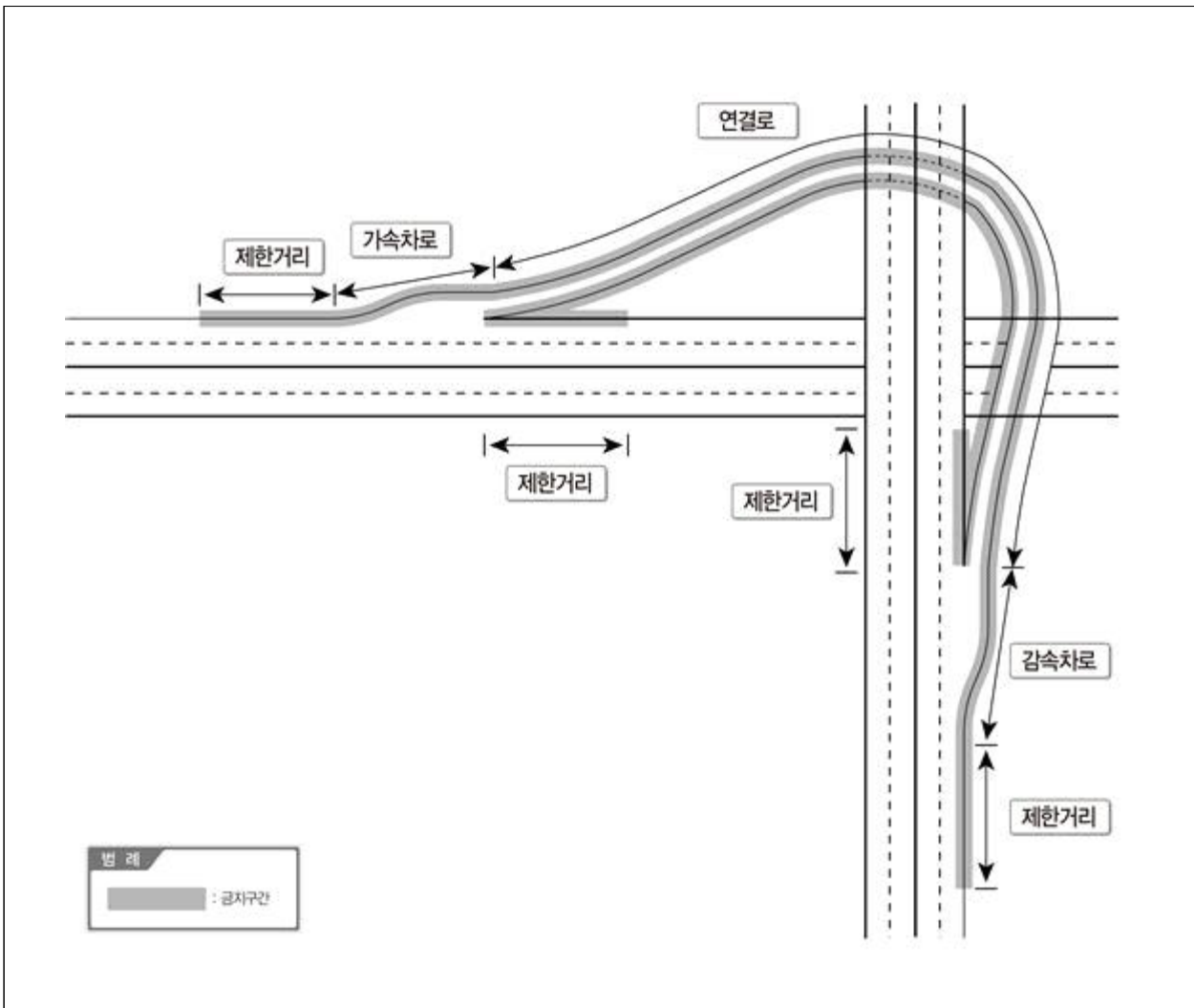
구분	4차로 이상	2차로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60	45

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도> 입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별표 5] <개정 2015.00.00.>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호 관련)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

시 설	주차 대수 (가구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	-	40 (25)	15 (10)	65 (45)	20 (15)
나. 휴게소·주유소 등	-	40 (25)	15 (10)	65 (45)	20 (15)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	-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라. 사도·농로·마을 진입로 또는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교 통용 통로 등	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	15 (10)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25(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20대 이하	15 (10)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25(20)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바. 주차장·건설기계 주기장·운수시설· 의료시설·운동시설 ·관람시설·집회시 설 및 위락시설 등	20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사. 공장·숙박시설· 업무시설·근린생활 시설 및 그 밖에 시 설	20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아.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20가구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			

	(100가구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101가구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

시 설	주차 대수 (가구 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	-	45 (30)	15 (10)	90 (65)	30 (20)
나. 휴게소·주유소 등	-	45 (30)	15 (10)	90 (65)	30 (20)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	-	30 (20)	10 (10)	60 (40)	20 (20)
라. 사도·농로·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20 (15)	10 (10)	40 (30)	20 (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10대 이하	20 (15)	10 (10)	40 (30)	20 (20)
	11대 이상 3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3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바. 주차장·건설기계주기장·운수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관람시설·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3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3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사.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및 그 밖의 시설	20대 이하	20 (15)	10 (10)	40 (30)	20 (20)
	21대 이상 5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5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아.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100가구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101가구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항목부터 항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 신청안내

(뒷 면)

근거법률	<p>○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 61조제1항).</p> <p>○도로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제64조제2항).</p>																			
처리절차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신 청 인</td> <td colspan="4" style="padding: 5px;">처 리 기 관</td> </tr> <tr>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신 청 서</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 수</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현지조사</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검 토</td> </tr> <tr>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발 급</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허 가 서</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결 재</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td> </tr> </table>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신 청 서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발 급	←	허 가 서	←	결 재	←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신 청 서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발 급	←	허 가 서	←	결 재	←	←														
유의사항	<p>○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p> <p>○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p> <p>○점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p>																			

※ 작성방법

- ①란은 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②란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만 해당됨)를 적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⑤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 ⑦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 ⑪란은 도로 노선번호를 적습니다.
- ⑬란에는 수입인지를 붙입니다.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 아래와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7일

신청인	① 성 명 (법인명)			②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전자우편	
	④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⑤ 허가번호					
⑥ 당초 허가기간					
⑦ 연결 목적					
⑧ 점용장소 · 점용면적		(m ²)			
⑨ 도로 종류 및 노선명					
⑩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⑪ 연장 사유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남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신청안내

(뒷 면)

근거법률	<p>○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 61조제1항).</p> <p>○도로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제64조제2항).</p>																			
처리절차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신 청 인</td> <td colspan="4" style="padding: 5px;">처 리 기 관</td> </tr> <tr>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신 청 서</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 수</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현지조사</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검 토</td> </tr> <tr>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발 급</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허 가 서</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결 재</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td> </tr> </table>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신 청 서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발 급	←	허 가 서	←	결 재	←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신 청 서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발 급	←	허 가 서	←	결 재	←	←														
유의사항	<p>○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p> <p>○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p> <p>○점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p>																			

※ 작성방법

- ①란은 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②란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만 해당됨)를 적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⑤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 ⑦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 ⑪란은 도로 노선번호를 적습니다.
- ⑬란에는 수입인지를 붙입니다.

[별지 제3호서식]

(앞 면)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10일

※ 아래와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신청인	① 성 명 (법인명)			② 생년월일 · 외국인 등록번호 (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전자우편
	④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⑤ 허가번호					
⑥ 허가기간					
⑦ 연결 목적					
⑧ 점용장소 · 점용면적		(m ²)			
⑨ 도로 종류 및 노선명					
⑩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⑪ 변경내용					
<p>「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남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남원시장 귀하</p>					
※ 구비서류: 변경내용 관계 도서					수수료
					없 음

※ 신청안내

(뒷 면)

근거법률	<p>○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 61조제1항).</p> <p>○도로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제64조제2항).</p>																			
처리절차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신 청 인</td> <td colspan="4" style="padding: 5px;">처 리 기 관</td> </tr> <tr>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신 청 서</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 수</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현지조사</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검 토</td> </tr> <tr>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발 급</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허 가 서</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결 재</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td> </tr> </table>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신 청 서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발 급	←	허 가 서	←	결 재	←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신 청 서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발 급	←	허 가 서	←	결 재	←	←														
유의사항	<p>○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p> <p>○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p> <p>○점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p>																			

※ 작성방법

- ①란은 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②란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만 해당됨)를 적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⑤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 ⑦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 ⑪란은 도로 노선번호를 적습니다.
- ⑬란에는 수입인지를 붙입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제3조의 적용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u>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절차, 설치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는</u>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u>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u>를 말한다.</p> <p>2. (생략)</p> <p>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u>가드레일, 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지 및 분리대</u> 등을 말한다.</p>	<p><u>남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도로법」 제52조----- ----- -----<u>연결하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u>----- ----- -----</p> <p>제2조(정의) ----- -----<u>뜻은</u>----- -----</p> <p>1.----- ----- -----<u>차로</u>----- -----</p> <p>2. (현행과 같음)</p> <p>3.----- -----<u>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사설(私設)안내표지</u>----- -----</p>

4.·5. (생략)

6. “교차로 영향권”이란 교차로 부근에서 교차로에 의하여 차량 운행이 영향을 받는 구간을 말한다.

7.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

4.·5. (현행과 같음)

<삭제>

7. (현행과 같음)

8. “측도(側道)”란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9.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10.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연석(緣石)”이란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선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

-- 제23조제2항 -----

는 일반국도·지방도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및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 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로와 동지역 안의 도로는 적용하지 아니하되, 교통사고가 현저히 우려되는 도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지 여건에 맞도록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 허가의 신청은 제4조에 따른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별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
 (이하 “다른 시설”-----

-----경
 우에-----

②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별 제52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변속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 시설 등(이하 “변속차로 등”이라 한다)의 설계도면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업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분석 등이 포함될 것)
- 2. 3. (생략)
- 4. 연결공사중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 5. 도로 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

출하여야 한다.

② -----도로와 다른 시설-----
-----붙여야-----

- 1. (현행과 같음)
- 2. 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 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의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

3.-----

---경우에만 해당 된다)

③ -----

-----.

- 1.-----

-----등을 포함한다)
- 2. 3. (현행과 같음)
- 4.연결공사 중의-----

- 5.-----

설물의 법정주차 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한정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 -----

-----작성요령-----
-----.

⑤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연결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에게 연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설을 연결하려면-----

-----신청하려는-----

-----해당 하는지-----
-----.

-----없으면 이에 따라
야-----.

⑥ 제1항에 따른 연결 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 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

-----변경신청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를 붙여야 한다)-----

<신 설>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 허가기준)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면 도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 허가 및 변경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는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제6호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연결허가구간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붙인다)를 작성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

 -----구간은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제1호·제2호·제5호-----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곡선반지름-----

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허가를 할 수 있다.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단서 신설>

시거(視距)-----

2.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구간은 연결 허가-----
-----.

3.-----

-----교차로는-----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상의 도로

나.·다. (생략)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4. 별표 4의2에 따른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 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생략)

6.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7.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아니한다.

가.-----제2조제1호에 따른-----

나.·다. (현행과 같음)

라.-----

주는-----

<삭제>

5. (현행과 같음)

6.다리-----

7.-----
-----설치되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

어-----
-----경우에는-----

제7조(변속차로 등의 포장 등) ① 변속차로 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7조(변속차로 등의 포장 등) ①

---같은 세기-----

② 변속차로 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 -----

-----같거나-----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변속차로) -----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 1.-----
-----할 것
- 2.-----할 것
- 3.-----
-----할 것
- 4.사업부지-----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2(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이 15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단서 신설>

제9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9호에 따른 길어깨(이하 “길어깨”라 한다)의 바깥쪽에 연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처리할 것.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5.-----

--같거나-----
-----설치할 것

제8조의2(부가차로) -----

-----.

- 1. 2. (현행과 같음)
- 3.-----
-----곡선반지름이 12미터-----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배수시설) -----

-----.

- 1.-----
-----길어깨-----

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존의 배수체계에 지장이 없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U형 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같은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쉽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한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빗물이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안 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 폭 30센티미터 이

-----설치할 것

2.-----

-----연결할 것

3.-----

-----설치로-----

-----설치하여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側溝)-----

-----설치할 것

4. -----

-----더러운 물-----

-----않도록-----

-----설치할 것.다만,-----

상, 유효 깊이 60센티미터 이
상의 U형 콘크리트 측구로 하
여야 한다.

제10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야 한다.

1.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
한 사업부지의 전면 등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
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분리대는 화단, 가드레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
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분리대는 높이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
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제10조(분리대) -----

1.-----

앞면-----

-----설치할 것

2.-----방호울타리,

교통섬(별표 2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치의 경우에 한정하

다),--인공구조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설치할

것

3.-----0.3미터(교통

섬은 0.12미터)-----

-----할 것

4.-----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 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 콘크리트 측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삭 제

7.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길어깨가 보도로도 이용되는 경우에

----않도록-----

----설치할 것-----

5.-----

----붙이거나-----

----설치할 것-----

6. 삭 제

7.-----

---- 경우-----

-----할 것-----

제11조(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

1. -----

----같은-----

-----할 것-----

는 보도의 폭을 활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 등의 노면이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25센티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 길어깨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부대시설) -----
-----.

1. 가드레일 또는 낙석 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 조건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 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

2.-----

-----방호울타리-----
-----할 것-----

3. -----
-----0.25미터-----
-----할 것-----

4.-----
-----방호울타리-----

-----할 것-----

제12조(부대시설) -----
-----.

1.방호울타리 -----

-----할 것-----

2. -----
-----같-----
-----은-----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 시행) 해당 변속차로 등을 제외하고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에 있어서 변속차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변속차로 등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되지 않은-----

--할 것

제13조(공사 시행) -----

----- - 중에서-----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6월 30일

남원시 조례 제 1171 호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를 “「도로법」 제 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으로, “부과·징수에 관하여”를 “부과·징수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을 “「도로법 시행령」 제55조“로 하고, “공작물”을 “인공구조물”이라 하며, “사람”을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탑, 광고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인정한 비·햇빛가리개 등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제3조 제1항 중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을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算定)”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3조 제3항 본문 중 “산정에 있어서”를 “산정은”으로, “직경”을 “지름”으로, “이상”을 각각 “미만”으로, “이상인 경우에는 1미만인 단수는”을 “미만인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를 “점용료를 산정할 경우”로 하고, “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 인접”을 “다만,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으로 한다.

제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시장은 다음”으로, “사업에 대하여는”을 “사업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토해양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비영리사업”을 “비영리사업은 전액 면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열수송시설”을 “열수송시설,”로, “국토해양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설치하는 사업”을 “설치하는 사업은 2분의 1 감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재해”를 “재해,”로,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경우”를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아닌 경우”를 “아닌 경우는 전액 면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경우”를 “경우는 10분의 1을 감면”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통행자의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는 2분의 1을 감면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시설의 경우는

전액 면제

제3조의2제2항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한다.

제4조 제1항 중 “2개년도”를 “2년”으로, “경우로서”를 “경우에는”으로,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를 “증가할 때의 해당 연도”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 한”을 “경우에 한정”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도로법」 제84조”를 “시장은 「도로법」 제6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간에 대하여”를 “기간은”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미만인 때”를 “미만인 경우”로, “부과 징수한다.”를 “부과·징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상인 때”를 “이상인 경우”로,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를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남은 금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9조 제1항 중 “징수하고자 할”을 “징수할”로, “발부”를 “발급”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을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 된 점용료의 징수는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 단위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 시설물	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 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 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직경 0.1m이하	길이 1m	1년	200
		직경 0.1m초과 0.2m이하			400
		직경 0.2m초과 0.4m이하			850
		직경 0.4m초과 0.6m이하			1,250
		직경 0.6m초과 0.8m이하			1,650
		직경 0.8m초과 1.0m이하			2,050
		직경 1.0m초과 2.0m이하			3,100
		직경 2.0m초과 3.0m이하			5,200
		직경 3.0m초과			7,250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 단위		
지 중 정 착 장치(어스 앵커), 압 거,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	직경 0.1m이하	길이 1m	1년	300	
	직경 0.1m초과 0.2m이하			600	
	직경 0.2m초과 0.4m이하			1,250	
	직경 0.4m초과 0.6m이하			1,850	
	직경 0.6m초과 0.8m이하			2,500	
	직경 0.8m초과 1.0m이하			3,100	
	직경 1.0m초과 2.0m이하			4,600	
	직경 2.0m초과 3.0m이하			7,750	
	직경 3.0m초과			10,850	
3. 간판(돌출 간판을 제외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적용)	표시면적 1㎡	1일	150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	1년	20,700	
	돌 출 간 판	표시면적 1㎡	1년	9,900	
	사 설 안 내 표 지	1개	1년	17,250	
	현 수 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50
		그 밖의 용도			150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 단위	
	아 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m ²	1년	41,400
		그 밖의 것			20,70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 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m ²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금액
	진입로·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m ²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 토의 계획 및 용에 관한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m ²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 단위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 자동입출금기·상품진 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금액
	노 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현금자동입출금기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150
	기 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 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 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1. 제1호부터 제10 호까지에서 규정 한 것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금액
	주 택			토지가격에 0.025을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 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는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별표 2]<개정 2013.5.10.>

점용료 조정산식 (제4조제1항 관련)

산출 점용료의 증가율(%)	적용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 이상 20 미만	10	전년도 점용료 × 1.10
20 이상 50 미만	14	전년도 점용료 × 1.14
50 이상 100 미만	18	전년도 점용료 × 1.18
100 이상 200 미만	22	전년도 점용료 × 1.22
200 이상 500 미만	26	전년도 점용료 × 1.26
500 이상	30	전년도 점용료 × 1.3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한다.</p> <p>②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9호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대상시설물은 다음과 같다.</p> <p>1. 광고탑, 광고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p>	<p><u>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u></p> <p>제1조(목적) -----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 -----부과·징수에----- ----- -----.</p> <p>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 --- ----- -----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 ----- -인공구조물----- ----- ----- --자-----.</p> <p>②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광고탑, 광고판, 가로판매대,</p>

사한 것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 및 직경은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이상 또는 점용길이가 1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미만의 단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점용길이가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까지 산정한다.

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

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인정한 비·햇빛가리개 등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 -----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算定)-----.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산정은-----

-----지름-----

-----미만-----
-----미만의 경우에는-----

-----.

④ 점용료를 산정할 경우-----

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다만,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

제3조의2(점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조의2(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사업은-----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1.-----

 -----국토교통부령
으로-----

 -----비영리사업은 전액 면제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 공급시설, 전기 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 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2.-----

 -----열수송시설,-----
 -----국토교통부령으로-----
 -----설치하는 사업은 2분의 1

3.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
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국토해양부령에서 정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
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
리목적이 아닌 경우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
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
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감면

3. 재해,-----

-----국토교통부령-----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에
서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4.-----

-----아닌 경우는 전액 면
제

5.-----

-----경우는 10분의 1을

감면

6. 통행자의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
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는 2분의 1을

감면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
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제4호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 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

4. 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시설의 경우는 전액 면제

②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 -----
-----2년-----
---경우에는-----

-----증가할 때의 해당
연도-----

로 한다.

②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 「도로법」 제84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5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따라-----

-----.

② -----

-----경우에 한장-----

-----.

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도로법」 제63조-----

-----.

② -----

-----기간은-----

-----.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 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신 설>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① -----
-다음 각 호-----.

1. ----- 경우-----

-----부과·징수-----
2. ----- 경우-----

-----개시-----
후 3개월-----징수-----

②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남은 금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
-- 징수할 -----

발급-----

② -----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6월 30일

남원시 조례 제 1172 호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9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의 무단 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남원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 제2항 중 “부과징수”를 “부과·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과징수”를 “부과·징수”로,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규정을”을 “「지방자치법」 제140조를”로 한다.

제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39조에 따라----- ----- ----- ----- -----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도로의 무단 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의 무단 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제3조(과태료) ① <u>납원시장</u> ----- ----- ----- -----

과·징수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② 과태료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4. 삭제

② -----부과·징수-----

-----.

③ -----부과·징수-----

-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

제4조(시행규칙) -----시행에-----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6월 30일

남원시 조례 제 1173 호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를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남원시”로, “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회계”를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법 제14조제1항”을 “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 제3항 및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법 제30조 및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
- 9. 「남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

10. 그 외 수입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외”를 “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외 한다)”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차장 관리 및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7.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보조)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를 보조할 경우에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2. ~ 7. (생략) 8. 과태료(법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9. 그 밖의 잡수입 <p><신 설></p> <p>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생략) 5. 교통질서 모범차량(영업용 	<p>제1조(목적) -----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남원시 -----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p> <p>제2조(세입)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 제3항 및 제14조제1항-- 2. ~ 7. (현행과 같음) 8. 법 제30조 및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 9. 「남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 10. 그 외 수입 <p>제3조(세출) -----</p> <p>-----</p> <p>외-----</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현행과 같음) 5. -----

차량은 제외 한다) 선정 운영
에 관한 비용

6. 그 밖의 주차장 확충에 필요
한 비용

<신 설>

<신 설>

제4조(잉여금의 처리) 당해연도
잉여금은 다음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관
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
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
다.

<신 설>

----- 제외한
다)- -----

6. 주차장 관리 및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7.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
과·징수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
한 비용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제5조(보조) 법 제21조제1항에 따
라 주차장 설치비를 보조할 경
우에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
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
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6월 30일

남원시 조례 제 1174 호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 시행령」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을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안의 주차장에 적용한다.

제3조제1항 중 “제7조 및 제12조”를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를 “긴급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한 때”를 “이용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않은 경우에는”을 “않은”으로, “때에”를 “때에는”으로, “부과한다.”를 “부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초과시간에 대하여는”을 “초과시간은”으로, “부과한다.”

를 “부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중에서”로, “차량에 대하여는”을 “차량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자가운전”으로, “동반한 일반차량”을 “동승한 차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자가운전”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자가운전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남원시”를 “시”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에너지절약시책(「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제3조 제4항 제4호 중 “경우”를 “차량”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세청장 또는 시장”을 “국세청장 및 시장”으로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다목 중 “필요하다고 정”을 “필요하다고 인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현황조사는 법”을 “현황조사는 법 제2조”로, “구분”을 “구분하여”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각각 구분”을 “구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적정성을 검증하되,”를 “적정성검증·유지 및 관리에 있어서”로,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해야”를 “의무를 다하여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주차장의 표지)”를 “(주차장의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를 “노상주차장의 표시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로, “표지는”을 “표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차제한 차량”을 “주차제한차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표지”를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차장 위치안내 표지”를 “노외주차장 위치안내 표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 제2항”을 “법 제13조 제3항”으로, “사람”을 “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 또는 개인”을 “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주차장에 대해서는”을 “주차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위탁료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공영유료주차장 : 점용면적(m²)×해당(인근)토지의 공시지가×25/1,000×점용기간(년)×운영일수/365×지수

※ 지수 = 동·읍면지역별 1회 주차요금(30분기준)/동지역 1회 주차요금(30분기준)

제7조 제1항 중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한다.

제7조의2 제2항 제1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부”를 “반환”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귀책사유

로 인하여”를 “귀책사유로”로, “의하여 환부한다”를 “따라 반환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잔여매수”를 “남은 매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을 “법 제10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때에는 제한시간(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때에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폭원,”를 “너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표준규격에 대하여는”을 “표준규격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인하여 당해”를 “해당”으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을 “지장이 없으면”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5퍼센트”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5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의 설치기준은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동반”을 각각 “동승”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65세 이상의 노인을 동승한 여성 운전자

제11조의2제3항제2호 중 “장소”를 “위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감시가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제11조의2제3항제4호 중 “근접한 곳”을 “가까운 위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구분하여 별표 11에 따른 아동 등 동반마크를 표시하여야”를 “구분하며, 그 규격과 내용은 별표 11과 같이”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의2”

를 “법 제12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300퍼센트이하”를 “500퍼센트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개”를 “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3.6배/도로의 너비”를 “36/도로의 너비 배”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1.8배미”를 “1.8배 미”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차장에 대하여는”을 “노외주차장은”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법 제19조제1항”을 “「주차장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 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 제2항 단서 중 “공동주차장으로서”를 “공동주차장으로”로, “그러하지 아니 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하인 때”를 “이하인 경우”로, “제외하고는 본”을 “제외하고는 해당”으로, “때까지 타”를 “때까지 다른”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중 “제공하고자 하는”을 “제공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 관한 사항은 노외주차장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19조제5항”을 “법 제1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요금으로서”를 “요금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은 공영”을 “시장은”으로, “사유로 인하여”를 “사유로”로, “된 때”를 “된 경우”로 한다.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 부설주차장의”를 “경우의 부설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정한다.”를 “산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산정한다.”를 “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을 “「부동

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률 제21조”로,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를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을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필요한”으로, “공영주차장”을 “노외주차장”으로, “「한국은행법」”을 “「한국은행법」 제86조”로, “산정한다.”를 “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산정한다.”를 각각 “산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로, “동법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 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를 “같은 법률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조에”를 “제14조 별표 3 비고 제10호”로, “호의”를 “호의 기준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옥내주차장”을 “건물안 주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를 “평탄 설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용표지를 하여야 한다.”를 “전용표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용이한”을 “쉬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설치하도록 한다.”를 “설치”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과징금과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을 “과징금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을 “시장은 과징금을 부과할”로, “납부기간”을 “납부기한”으로,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를 “적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로, “발부일”을 “발급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 제3항 단서 중 “지정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을 “지정한 날까지 의견진술이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납부기한까지”를 “시장은 납부기한까지”로, “발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체납처분”을 “징수”로, “강제 징수한다”를 “징수한다”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조성된 공영주차장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제11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4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 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 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 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수×10)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수×1) ○ 옥외수영장 : 정원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관리지역 내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 적용은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한함. 다만, 「건축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은 제외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 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 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 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 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 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 가. 2단 단승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드는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p>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 지역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안의 주차장에 적용한다.</p>
<p>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 규정을 정하여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p>	<p>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① ----- -----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p>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②-----
----- 긴급자동차

-----.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 방법에 따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③ -----
----- 이
----- 용한 경우-----

-----.

1. 제8조제1항의 방법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1. -----
----- 않은-----
----- 때
----- 에는 -----

----- 부과

2. 주차요금은 30분단위로 계산하되 매 30분단위 이상 주차의 경우 매 30분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10분단위로 하여 별표 1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

----- 초과시간은-----

----- 부과

④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

④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중에서 - 차량은--

여는 주차요금을 경감한다.

1.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2.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자가운전 차량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3. 정부시책 및 남원시의 중요시책에 참여하는 차량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가. 에너지절약시책(「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경형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나. (생략)

<신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자가운전 -- 동승한 차량-----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자가운전하는 --

3. ----- 시-----

가. 에너지절약시책(「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나. (현행과 같음)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4. -----

----- 차량 -----

5.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세청장 또는 시
 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증(스
 티커) 표시를 부착한 차량 :
 전액감면(발급일로부터 1년
 간)

제3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
 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
 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를 실시하여야 한다.

- 1.·2. (생략)
- 3. 실태조사 내용
 - 가.·나. (생략)
 -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
고 정하는 사항
- 4. 실태조사 방법
 -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
 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
 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
 로 각각 구분 조사

5. -----

국세청장 및 시장-----

제3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① -----

- 1.·2. (현행과 같음)
- 3.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필요
하다고 인정-----
- 4. -----
 가.----- 현황조사는
법 제2조-----
구분하여 --
 나.-----

 -- 구분하여-----

② (생략)

③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시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④ (생략)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시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고 노외주차장의 표시는 별표 7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 1. ~ 3. (생략)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적정성검증 · 유지 및 관리에 있어서 -- 의무를 다하여야-----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시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표시는 -----
-----.

② 공영주차장-----

-----.

- 1. ~ 3. (현행과 같음)
- 4. -----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안내 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9에 의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법인 또는 개인

2. (생략)

주차제한차량 ----

③ -----

----- 표지 -----
-----.

④ 노외주차장 위치안내 표지-----

따른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 법 제13조제3항 -----
----- 자 -----

-----.

1. -----

----- 자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
 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
 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기
 탁의 경우-----

③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
 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
 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
 가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
 의 8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그 밖의 경우-----

③ -----

-----주차장은-----

④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기간
 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주차장의 설치) 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후, 도지사의 실시계획 인가 또는 시장의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7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생 략)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

⑤제2항에 따른 위탁료의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공영유료주차장 : 점용면적(m²)×해당(인근)토지의 공시지가×25/1,000×점용기간(년)×운영일수/365×지수

※ 지수 = 동·읍면지역별 1회 주차요금(30분기준)/동지역 1회 주차요금(30분기준)

제7조(주차장의 설치) ① -----

----- 공영주차장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
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
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
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
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
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
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대수
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
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
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
(킬로미터)/8

2. (생략)

③ (생략)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
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
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
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

한정한다)----- 따라-----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
수방법) ① -----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3. (생략)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기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환부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이용제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게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 따른 -----

2. 3. (현행과 같음)

② -----
----- 반환 -----

----- 귀책사유로 -----

----- 따라 반환한다.

1. ----- 남은 매수 -----

2. ----- 남은 기간 -----

제9조(이용제한) 법 제10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때에는 제한시간(기간)-----

----- 때에 예외로 한다.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2
 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
 로의 폭원,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
 에 대하여는 규칙 제3조를 준용
 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 주차방식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
 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
 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의2(아동 등 배려 주차구획
 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
 2항에 따라 아동 등 배려 주차
 구획은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
치하되, 설치기준은 5퍼센트 이
상으로 한다.

② 아동 등 배려주차장을 이용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 너비 -----

 -----.

② ----- 표
준규격은 -----
 -----.

③ -----

 -----.
 ----- 해당 -----
 ----- 지장이 없으면

 -----.

제11조의2(아동 등 배려 주차구획
 의 설치기준 등) ① -----

 -----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5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의 설치기준
은 10퍼센트 -.

② -----

할 수 있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동반한 여성 운전자
- 2. 임산부 및 임산부를 동반한 여성 운전자

<신 설>

③ 아동 등 배려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1. (생 략)
-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정성이 확보되는 장소

3. 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④ 아동 등 배려 주차구획의 표

-----.

- 1. -----
-- 동승-----
- 2. -----
- 동승-----

3. 65세 이상의 노인을 동승한
여성 운전자

③ -----

-----.

- 1. (현행과 같음)
- 2. -----

----- 위치

3. 감시가 쉽고 통행이 잦은 위
치

4. -----

----- 가

까운 위치

④ -----

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표 11에 따른 아동 등 동반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주차전용 건축물)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의2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2. (생략)
- 3. 용적율 : 1천 300퍼센트이하
- 4. 높이제한 : 다음 각 목의 배율을 이하로 하되, 대지가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적용한다.
 - 가. (생략)
 -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

----- 구분하며, 그
규격과 내용은 별표 11과 같이-----
-----.

제12조(주차전용 건축물) 별 제12조의2-----

- 1.·2. (현행과 같음)
- 3. ----- 500퍼센트이하
- 4. -----

둘-----

가. (현행과 같음)
나. -----

----- 36

6배/도로의 너비. 다만,
배율이 1.8배미만인 경우
에는 1.8배로 한다.

제13조(주차장설치 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
설물 및 설치기준) ① 법 제19
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삭제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 ① (생략)
- ② 공동주차장의 설치는 2명 이
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
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
하는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
으로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1대
이상의 주차면적의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도로의 너비 배. -----
----- 1.8배 미-----
-----.

제13조(주차장설치 심의 등) ----

---- 노외주차장은-----

-----.

- 1. ~ 3. (현행과 같음)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
설물 및 설치기준) ① 「주차장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

- ② 삭제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 공동주차장으로-----

예외로 한다.

③ 부설주차장의 1대당 주차 소
 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18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하
 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
하인 때에는 주차대수 1대당 소
 요 대지면적은 11.5제곱미터로
 하며, 부설주차장은 영 제12조
 에 따라 용도변경의 경우를 제
외하고는 본 시설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
 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① 법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의
 3제2항에 따른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종류와 규모는 제한이 없으며,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반의 이용시간, 관리
 비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 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 규정을
신고한 때에는 규칙 제8조제1항
및 규칙 제9조제1항을 준용한
다.

③ -----

 ----- 이하인 경
우 -----

 ----- 제외하고는 해당 -----
 ----- 때까지 다른 -----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① -----

 ----- 제공하려는 -----

②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
관한 사항은 노외주차장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비용납부자와 설치의무 면제)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8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무상사용증을 교부할 공영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서 나누어서 산정한 기준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의무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공영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18조(비용납부자와 설치의무 면제) ① -----법 제19조제6항-----

----- 예외로 한다.

② -----요금으로-----

③ 시장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구획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사유로-----

----- 된 경우-----

-----.

제18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

----- 경우의 부
설주차장-----

-----.

1. -----

----- 산정

2. -----

해당 -----

----- 산정

3. ----- 「부동산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 (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에 따라 조사·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의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 같은 법률 제21조-----
-----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

4. -----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필요한-----

----- 노외주차장-----

----- 「한국은행법」 제86조-----
----- 산정

② -----

1. -----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 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 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 기준) ① 규칙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의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 산정

2. -----

----- 산정

3.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

----- 같은 법률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 기준) ① 제14조 별표 3 비고 제 10호 ----- 호의 기준에 -----

- 1. (현행과 같음)
- 2. 건물안주차장 -----

3. (생략)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별표 10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제20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과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현행과 같음)

② -----

-----.

1. -----

----- 평탄 설치

2. -----
----- 전용표지

③ 장애인 -----

-----.

1. -----

----- 쉬운 -----
----- 설치

2. -----

----- 설치

제20조(과징금 처분) ① -----
----- 과징금과 -----

-----.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간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지정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② 시장은 과징금을 부과할-----

----- 납부기한 -----
----- 적은 납부통지서를 발급
하여야-----
----- 발급일-----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지정한 날까지 의견진술이 없으면-----

④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

----- 발급-----

⑤ -----

----- 징수-----
----- 징수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6월 30일

남원시 조례 제 1175 호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26조의 규정”을 “「지역보건법」 제26조”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1조를 위반하여”를 “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로 한다.

제5조 중 “부과하고자 할”을 “부과할”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부과하고자 하는”을 “부과할”로, “미리 당사자등”을 “당사자 등”으로,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을 “구술”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15일”을 “30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제11조 중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한다.

별표 및 별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제4조 관련)

I. 일반기준

-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 나.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해당 영업(소)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 등)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II.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1. 「지역보건법」 제18조(건강진단 등의 신고) 위반 가.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 또는 지역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및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고 의료기관 외의 장소 또는 지역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및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2. 「지역보건법」 제21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의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별지 제1호서식]

위 반 행 위 조 사 서 (제5조 관련)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위반기관 또는 해당업소	명 칭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전 화	
위반사항	적발일시			
	위반법규			
	위반내용			
	기 타	※ 위반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		
조사자 의견				
관련자료 근거		1. 자(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행위 유무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남원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통지서(제7조제1항 관련)

문서번호 :

수신처 :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귀하는 아래와 같이 「지역보건법」 제 7조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26조 및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 당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반행위	일시		업종	
	내용			
위반장소				
처분내용	과태료 :			

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제7조제2항 관련)

문서번호 :

수신처 :

제 목 : 과태료 납부 독촉

납부 의무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업소명 (시설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과태료 납부고지서 번호				
위반사항				
과태료금액			당초 납부기일	

위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 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남원시장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제7조제3항 관련)

문서번호 :
 수신처 :
 제 목 :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과태료납부 고지서번호				
취소(변경) 내 역	당초 납부액	취소(변경)금액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붙임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제8조제1항 관련)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과태료 처분내역	납부기간		납부통지서번호	
	고지받은 일자		과태료금액	
	과태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p>「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위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p> <p>남원시장 귀하</p>				
구비서류	없음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8조제2항 관련)

문서번호 :

수 신 :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장 발 신 : 남원시장 (인)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역보건법」 제26조제4항과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 제 조 위반자에 대하여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고지일자		과태료금액	
	부과기관		이의제기일자	
이 의 제 기 사 유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 붙임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사본 1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역보건법</u>」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기준 및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지역보건법</u>」 제26조----- ----- ----- ----- -----.</p>
<p>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 ----- ----- -----.</p>
<p>1. 「<u>지역보건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p>	<p>1. ----- ----- ----- <u>거짓으로</u> ----- -----</p>
<p>2. <u>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u></p>	<p>2. <u>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u> --</p>
<p>제5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시장이 과태료를 <u>부과하고자 할 때에는</u> 해당 위반행위 유무를 조사·확인 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p>	<p>제5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 <u>부과할</u>----- ----- -----.</p>
<p>제6조(처분통지 및 의견진술) ① 제3조에 따라 과태료를 <u>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u> 「<u>행정절차법</u>」 제21조에 따라 <u>미리 당사자등에게</u>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p>	<p>제6조(처분통지 및 의견진술) ① ----- <u>부과할</u>----- ----- ----- <u>당사자 등</u>-----</p>

여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생략)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 (생략)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1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남원시의 수입으로 한다.

구술-----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30
일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

----- 60일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과태료의 귀속) -----
----- 세
외수입-----.